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

##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권 인 순 의원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4-9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년월일: 2024. 7. .

발의자: 권인순, 강동오, 고병준, 김승수,  
남해석, 오욱자, 이한동, 차해영,  
최은하, 한선미

### 1. 개정이유

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, 가정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보호자가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무(안 제4조)
- 나.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삭제(안 제8조)
- 다.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- 라.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(안 제13조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아동복지법 제29조의7

나.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4. 7. 24. ~ 7. 30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,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, 제4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보호자의 책무)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) ① 구청장은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경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종전의 제7조)제1항 및 제2항 중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을 각각 “구”로

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,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, 교육, 의료적·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| <p><u>제4조(보호자의 책무)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 |
| <p><u>제4조 ~ 제6조 (생 략)</u></p>   | <p><u>제5조 ~ 제7조 (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)</u></p>   |
| <p><u>제7조(아동학대 신고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<u>아동보호전문기관</u>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<u>아동보호전문기관</u>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.</p> | <p><u>제8조(아동학대 신고) ① -----</u>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<u>구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<u>구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|
| <p><u>제8조 ~ 제10조 (생 략)</u></p>  | <p><u>제9조 ~ 제11조 (현행 제8조부터</u></p>   |

<신 설>

제11조 · 제12조 (생략)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까지와 같음)

제12조(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) ① 구청장은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경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 · 제15조 (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)

제13조(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,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, 교육, 의료적·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아동복지법

[시행 2024. 8. 7.] [법률 제20218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
제29조의7(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전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전담의료기관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, 피해아동·가족·친족, 보장원의 장,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, 경찰관서의 장,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. 15., 2020. 4. 7.>

1.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
2. 신체적·정신적 치료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
3.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경우

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### ( 약칭: 아동학대처벌법 )

[시행 2023. 12. 26.] [법률 제19832호, 2023. 12. 26., 일부개정]

**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**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4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9. 1. 15., 2020. 3. 24., 2022. 12. 27.>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(이하 “아동권리보장원”이라 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
(생략)

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 
어려움

4. 작성자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임근영 |
| 연 락 처  | 02-3153-8612      |